##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2

발의연월일: 2020. 12. 7.

발 의 자:최기상·조응천·박영순

박용진 • 이탄희 • 김경만

이광재 · 최인호 · 정일영

신현영 · 강훈식 · 윤건영

의원(12인)

## 제안이유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 방식으로 각종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 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법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에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에 비디오 등의 중계시설을 설 치하여 영상재판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재판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 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7조의2 제1항 신 설).
- 나.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있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 론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7조의2 제2항 신설).

#### 법률 제 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 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 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 ② 법원은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원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 정 안 제16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심문기일을 열수 있다. ② 법원은 멀리 떨어진 곳 또는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있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상대방의 의견을들어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비디오 등중계장치에 의한

# 및 제3항을 준용한다.